

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- 「행정사법」 제25조에 따라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-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연수교육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위탁내용

- 대상사무 : 「행정사법」 제25조에 따른 행정사 연수교육
- 위탁기간 : 2024. 1. ~ 2025. 12.
- 수탁기관 :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

- 수탁자 선정방식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름
- 소요예산 : 없음
- 세부내용
 - 행정사 연수교육 기획·운영
 - 연수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자와 교육 수행 인력 확보
 - 교육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·운영
 -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비 관리 계획
 -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
 - 기타 연수교육에 관련된 사항
- 향후 추진계획
 - 수탁기관 공모·선정 : 2023. 10. ~ 11.
 -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공고 : 2023. 11. ~ 12.
 - 위탁운영 실시 : 2024. 1. ~ 2025. 12.

5. 검토의견

- 「행정사법」 제25조 및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실무교육 60시간,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년 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.
- 이번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교육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- 행정사의 업무적 자질 및 전문성,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회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내실있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됨.

- 다만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등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람.

붙임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끝.